

대신대학교 학칙시행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시행내규는 본교 학칙에 의거하여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등록·휴학·복학 및 재입학

제2조 (등록절차) ① 학생은 매학기 초 정한기한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 까지 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등록절차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 끝난다.

②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가. 학기개시일 전 : 등록금 전액 반환

나.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등록금 5/6 해당액

다.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등록금 2/3 해당액

라.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등록금 1/2 해당액

마.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개정2011.4.1)

③ 등록금을 대체인정 받은 학생이 자퇴하는 경우에는 휴학당시 수업한 일수와 복학하여 자퇴 신청 시까지 수업한 일수 중에서 수업일수가 많은 것을 기준하여 2항에 의거 반환 한다.

제3조 (휴학) ① 휴학은 일반휴학과 군 휴학으로 구분된다.

1. 일반휴학 : 가. 가사사정으로 인한 휴학

나. 질병으로 인한 휴학 : 진단서 첨부

다. 기타 사유로 인한 휴학 : 학과장 동의서 첨부

라.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 : 임신과 출산 및 육아 등 관련 사실
을 입증할 증빙서류 첨부(신설 2017.1.1.)

2. 군 휴학 : 입영 통지서 첨부

② 일반휴학중인 학생이 군 입대하게 될 경우 : 군 입대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 휴학사유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 (휴학기간) ① 일반휴학의 기간은 1학기 또는 2학기 단위로 하며, 재학 중 3회에 한한다.<개정 2018.11.1>

② 군 휴학은 군복무 기간으로 한다. 단, 병역 의무기간은 휴학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은 ①항의 규정에 의한 휴학 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1.)

제5조 (휴학절차) ① 학생이 질병, 군 입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어 휴학을 할 때에는 당해 학기 수업일수 2/3 이내에 휴학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휴학할 수 있다. 단, 휴학사유가 질병 및 군 입대 제외하고는 수업일수 2/3이후에는 휴학할 수 없다.(개정2017.1.1.)

② 재학생 및 일반휴학자 중 입영영장을 받은 학생은 입영 1주일 전까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 입대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입학년도 제1학기에는 질병 및 군 입대,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을 제외하고는 휴학을 허락하지 아니한다.(개정2017.1.1.)

제6조 (휴학명령) 학기 개강 후 5주 이내 등록을 못할 경우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등록금 인정) 휴학신청 시기에 따른 복학 시 등록금대체 인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휴학

가. 해당학기 수업일수 1/3선 이전 신청자 : 등록금 전액 대체 인정

나. 해당학기 수업일수 1/3선 익일부터 1/2선까지 신청자 : 등록금 반액 대체 인정

다. 해당학기 수업일수 1/2선 익일이후 신청자 : 등록금 소멸

2. 군 휴학 : 등록금 전액 대체 인정

단, 해당학기 수업일수 2/3선 익일부터 정기시험 종료일 이전까지 군 휴학 신청자 중 성적취득을 희망한 경우에는 등록금이 소멸된다.

제8조 (군 휴학생의 성적 인정) 수업일수 2/3가 경과한 후 군 휴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담당교수는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9조 (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된 때와 휴학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한하여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학기초 15일 이내에 복학할 수 있다.

② 군복무 만료로 복학하는 학생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첨부하여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된다.

제10조 (재입학) ① 자퇴 또는 미등록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정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락할 수 있다. 단, 징계처분 받아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불허한다.

② 재입학은 제적당시 학과 및 학년 이하에 한한다. 단, 과거의 학업성적을 사정하여 학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재적하였던 학과(전공)가 폐지된 경우에는 유사학과 등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장 전과

제11조 (전과기준) 전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2학년 1학기 또는 3학년 1학기 개시전 30일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8.3.1.)

제12조 (전과 방법) ① 총장은 전과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개시 전 학과별 예정인원과 접수기간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② 전과 신청은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을 행할 수 있다.

제13조 (전과의 절차) 전과를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4조 (전과의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전과할 수 없다.

1. 야간에서 주간 학과로의 전과
2. 편입학한 자(단, 편입생은 3학년 2학기 개시 전 전과 신청 가능)
3. 삭제(2018.3.1.)

제15조 (이수과목 및 학점) 전과가 허가된 학생은 전입된 학과(부)의 전공소요학점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이미 취득한 전공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하고, 전과 전에 취득학점 중 전입된 학과(부)의 전공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 2018.3.1.)

제4장 수강신청

제16조 (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과목을 온라인 전산시스템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수강신청은 타 학과의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개정2019.04.01.)
2. 삭제(개정2019.04.01.)
3.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그 학기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4.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이수한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5.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부 교과목의 수강을 불허하거나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6. 최대학점을 초과 신청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택과목 취득학점을 우선으로 무효 처리한다.

제17조 (학기당 수강학점) 매학기 수강신청 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2013.3.1., 2014.9.1., 2017. 3. 8))

| 학번 기준 | 수강신청 학점 | |
|-------------------|----------|----------|
| | 최소 신청 학점 | 최대 신청 학점 |
| 2012학번까지 | 18학점 이상 | 22학점 까지 |
| 2013학번부터 2016학번까지 | 17학점 이상 | 20학점 까지 |
| 2017학번부터 | 15학점 이상 | 18학점 까지 |

1. 4학년의 최소 수강신청 학점은 **1학기 9학점, 2학기 6학점**으로 한다.(단, 2013~2016학번까지는 1학기 13학점, 2학기 7학점, 2012학번까지는 1학기 15학점, 2학기 9학점으로 한다.)
2. 매 학기 9학점(2013~2016학번까지는 13학점, 2012학번까지는 15학점) 미만을 취득한 학생은 각종 장학금 및 우등생 표창에서 제외된다(단, 4학년 2학기 6학점 미만).
3. 재이수과목 학점을 포함하여 **18학점**(2013~2016학번까지는 20학점, 2012학번까지는 2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 3. 8)
4. 총 성적 평균평점이 3.50이상인 학생은 22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신설 2017. 3. 8)

제18조 (폐강) 수강신청 학생수가 10명 미만인 교과목은 폐강할 수 있다. 단, 학과(부)의 사정 또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강할 수 있다.(개정 2011.4.1)

제19조 (시간중복 수강신청 금지)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이수하여도 그 성적은 무효로 한다.

제20조 (수강신청 변경) ① 수강승인이 된 교과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 정정을 할 수 없다.

② 수강신청 완료 후 강의시간의 변경, 폐강, 기타 정당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수강이 불가능할 때에는 소정기간 내에 수강정정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 2(수강 포기) ① 수강신청한 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1/3선 이내에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 학부(과)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포기할 수 있다.(신설 2012.07.01)

② 수강 포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강포기제 운영 규정에 의한다.(신설 2012.07.01)

제21조 (중복수강 금지와 학점포기) ① 동일명칭의 교과목은 그 성적을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삭제 2014.9.1.)

제21조의 2(재이수 신청) ① 기 취득한 과목의 성적이 C+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재이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재이수신청서를 수강신청(정정) 기간 내에 교무과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9.1.)

② 성적사정 후 기 취득한 성적과 재이수하여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만을 인정하여 성적표에 기재 한다.(신설 2014.9.1.)

제22조 삭제(2014.9.1.)

제5장 성적의 평가

제 23조 (성적평가) ① 성적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추가시험 및 출석, 과제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인정하며 총 강의 시간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성적평가에서 제외된다.

② 학생처장이 승인하는 공식 행사에 참가하는 학생은 출석 인정서를 제출하게 하여 행사 참가 기간 중 해당 교과목 강의시간의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필수과목을 낙제했을 경우 차 학년 동일 학기에 동일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개정 2014.9.1.)

④ 재 이수 교과목이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동일과목으로 이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체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폐강 등의 사유로 대체과목을 이수할 수 없을 경우 해당학점수 만큼 다른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2011.4.1)

⑤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착오(오기, 누락)에 의하여 성적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성적정정원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답안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정할 수 있다.

⑥ 담당부서에서 인정하는 운동부에 소속되어 공식적인 단체의 리그에 참여하거나 훈련중인 학생들의 성적평가는 학생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교과목 교원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평가의 방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며, 성적등급도 절대평가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2021.3.1. 개정)

제23조의 2(성적환산) 성적은 평점과 백분위 점수를 적용한다. 백분위 평균을 산정할 때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단, 백분위 점수는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신설2014.9.1.) (개정2018.11.5.)

제24조(성적평가 등급)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다음 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및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과 강좌의 특성상 상대평가가 불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은 교과목은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0.10.01.,2014.9.1)

| 구분 | A | B | C | D | F |
|----|-------|-------|---|----|---|
| 교양 | 0~30% | 0~60% | | 자율 | |
| 전공 | 0~30% | 0~70% | | 자율 | |

※ 단, A등급과 B등급의 합은 교양과목은 60%, 전공과목은 70%를 초과할 수 없다.

제 25조 (성적의 등록) ① 성적이 C+ 이하인 과목의 경우 재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으로 대치할 수 있다.(개정2014.9.1.)

② 평균평점이 동점일 경우

1. 취득학점이 많은 순서
2. 최고의 성적이 많은 순서로 처리한다.
3. 필수 학점의 평점이 높은 순서로 처리한다.

제26조 (성적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

1.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수한 과목의 성적
2. 학점이수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과목을 중복 이수한 성적
3.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자의 성적

제 27조 (성적이의) 해당학기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정한 기한 내에 성적이의를 신

청하여 수정할 수 있다.

제 28조 (추가시험) ①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학생은 시

험기간 전에 과목 담당교수의 확인 후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허가를 받은 학생에 한하여 중간 또는 기말시험의 추가시험을 인정하되 성적은 B급 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③ 전공실기 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학기 내에 담당교수별로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6장 경건회

제29조 (경건회) 본 대학교의 설립목적에 따라 재학생은 교내 예배에 참석하여야 하고, 이를 예배학점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예배학점은 8학기를 Pass해야 하며, 편입생은 편입 후 잔여학기를 Pass하여야 한다.
- ② 예배학점을 Pass하지 못한 자는 해당학기 기말고사 후 실천처에서 실시하는 경건훈련 및 기타 봉사에 참석하여 Pass하여야 한다.
- ③ 세부적인 사항은 예배학점운영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7장 성적 경고

제30조 (학사경고) ① 재학 중 매 학기 성적이 평균평점이 1.5 미만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개정2019.04.01.)

- ② 제1항에 의해 학사경고를 부과한 경우 이 사실을 자체 없이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삭제(개정2019.04.01.)
- ④ 삭제(2011.10.1)

⑤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한 후 통산 2회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한다.

제8장 유급제도

제31조 (유급제도) ① 성적불량자 중 학업성취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학력을 보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유급을 시킬 수 있다.

② 1, 2 학기 계속 각 8학점 이상 취득하지 못한 경우 유급 시킬 수 있다. (단, 2013-2016학번은 10학점).(개정2018.3.1.)

③ 동일학년 1,2학기 연속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당학기만 유급처리하며, 기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개정2014.9.1.)

④ 삭제(개정2019.04.01.)

⑤ 유급통지서를 받은 학생은 해당 학기 초 유급 처리원을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복학 시 유급자 복학원을 작성, 교무과에 제출하고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장 편입생에 대한 학점 인정

제32조 (학점인정) ① 편입자의 인정학점은 본교 학년별 수료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전적대학의 취득학점이 본교 수료학점에 미달된 경우 취득학점 수만 인정한다.

② 편입자는 편입학부(과)의 교육과정에 따라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편입학부(과)에서 선수과목을 지정할 경우 지정한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동일계열로의 편입생에게는 선수과목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2011.4.1)

③ 편입학생이 취득해야할 전공필수과목은 편입인정학기부터 개설되는 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개정2011.4.1)

④ 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명칭이나 학점이 편입학과(부)의 교과과정과 동일할 경우 이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사범계열학과의 편입생의 과목 인정의 경우 반드시 현재의 전공과 일치하는 전적대학의 전공과목과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된 과목의 성적등급 P(Pass)로 한다.(개정2011.4.1)

제33조 (수학기간) 3학년으로 편입한 학생은 4학기 이상 수학하여야 한다.

제34조 (편입학 취소) ① 편입학이 허가된 학생일지라도 조회결과가 부실한 경우에는 편입 취소 또는 학년을 재사정할 수 있다.

② 지원당시의 미비서류는 편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경과 시에는 편입학을 취소할 수도 있다.

제10장 졸업

제35조 (졸업자격) 졸업은 4년(8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졸업논문(실기발표, 졸업시험 등)의 심사에 통과한 자라야 한다.<개정2021.3.1>

제36조 (졸업학점 및 요건)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20학점(단, 2013~2016학번까지는 130학점, 2012학번까지는 140학점) 이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2013.3.1., 2014.9.1, 2017. 3. 8))

② 졸업요건은 다음과 같다.

1. 4년(8학기)이상 등록한 자
2. 소정의 전공 및 교양 필수과목을 이수한 자
3. 예배과목 8학기를 Pass한 자
4. 삭제(2014.9.1.)

제11장 졸업논문

제37조 (졸업논문) ① 본교 학생으로 졸업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최종 졸업학기에 등록을 필 한 자라야 한다.

② 졸업논문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각 학과별로 따로 정하며 학과에서 지정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자에게 졸업논문, 졸업시험, 실기발표 등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1.3.1>

제38조 (졸업논문대체) ① 학부(과)에 따라 졸업시험, 실기발표 등으로 졸업논문을 대체 할 수 있다.

② 졸업논문을 실기발표로 대체할 경우에는 실기예정일을 공고하고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토록 한다.

③ 졸업논문을 졸업시험, 등으로 대체할 경우 이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각 학과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장 학점등록

제39조 (학점등록) ① 8학기(4학년 2학기) 등록을 필하고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학을 계속하는 경우 그 부족학점에 대하여 학점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학점등록은 해당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40조 (학점등록금) 학점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7항에 의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2011.4.1)

제13장 제증명 발급

제41조 (증명서류의 종류) 증명서의 종류는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이다.

제42조 (발급대장 및 기준) ① 제증명서는 졸업생, 졸업예정자, 재학생, 제적생에게 발급한다.

② 졸업예정 증명서 발급은 4학년 2학기까지의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4학년 1학기까지 취득한 학점과 4학년 2학기 수강 신청한 학점의 합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인 자에게 발급한다.

제43조 (학적부 정정) 학적부에 기재된 생년월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학생의 인적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적부 정정원과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개정학칙시행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개정학칙시행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개정학칙시행내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개정학칙시행내규는 2007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개정학칙시행내규는 2007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대신대학교 학칙을 전면개정으로 종전 학칙시행내규를 보완 및 수정하여 학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신 개정된 학칙시행 내규로 적용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학칙시행내규는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시행내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시행내규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시행내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7조 규정과 제36조 규정은 2013학년도 입학생(편입생은 201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3조의 2 규정은 2018학년도 1학기까지 성적 평점평균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표 1의 성적평점 환산기준표를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개정 학칙시행내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본 개정 학칙시행내규는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

1.(시행일) 본 개정 학칙시행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